

###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

**Q**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-31-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의 6. 4자간 무역거래의 을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.

해당 거래를 시작하면서 검토 부족으로 을인 당사가 갑에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.

본 사유가 법인세법 제121조 6항, 법인세제과-1279(2019.9.18), 법인세제과-893(2018.7.23)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, 귀 법인의 의견은 어떠신지요?

**A** 국내사업자간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거래를 하면 되는데,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귀사가 제시한 유권해석(법인세제과-893)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.

다만, 해당 내용은 과세관청에서 해당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.

### 인근 마을 식대

**Q** 인근마을에 음식,상품 등을 사서 명절 선물 등으로 드렸는데, 영수증 발행이 안되기에 기부금이 안될것같은데

거래처가 아닌데 접대비로 처리시 인정되나요? 복리후생비는 안될것같고,

**A** 업무관련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업무연관성이 없으면 기부금(비지정기부금)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.

### 교직원 진료비 감면 과세 관련

**Q** 부부가 모두 교직원인 경우, 교직원의 가족으로서 자녀가 받은 진료비 감면이나 학비 감면을 과세할 때 부부가 금액을 나눠서 과세해도 괜찮은가요?

진료비 감면액 중 일부는 부, 일부는 모에게 과세하는게 가능하다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와는 연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.

- 부에게 자녀의 인적공제를 넣을 경우, 부/모 에게 해당 자녀의 진료비 감면액을 나눠서 과세해도 되는지,  
부에게 몰아서 다 과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.
- A** 원내 직원의 감면 관련하여 부부 모두가 직원인 경우 자녀의 학비나 진료비 감면액을 부/모 어느 한쪽에서 반영해야 하는지, 나누어야 하는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, 귀원의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.

### 시에서 관리하는 땅에 보수작업을 할 경우 계정처리

- Q** 시에서 관리하는 공터에 회사와 시에서 각각 비용을 내어 보수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 
(2천만원일 경우 회사 600백만원, 시 1400만원)  
흙으로 된 공터에 바닥 평탄화작업, 잡초등 풀이 안자라도록 매트설치 등의 작업이 있을 예정인데, 여기에 투입되는 회사의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?
- A** 귀사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 귀사의 비용을 들여 보수작업을 하는 사유가 질의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, 귀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접대성 경비이며 업무무관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### 주상절리 석재 구입

- Q** 당사의 조경용으로 주상절리 석재를 다량 구입했습니다.  
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 드립니다.  
토지에 대한 원가, 건축물, 기타자산,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할지?
- A**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별도로 조경용 시설물을 토지위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